# 한겨레신문 윤리강령 실천요강

한겨레신문사의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요강을 지키기로 다짐한다.

# 1. 언론자유의 수호

- 1) 우리는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에 의한 편집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.
- 2) 우리는 수사·정보기관원의 신문사 출입 및 신문제작과 관련한 불법연행을 거부하며 부당하게 연행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위해 힘을 합쳐 대처한다.

## 2. 금품

- 1) 우리는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금품을 정중히 사절한다.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에게 전달되는 금품도 마찬가지다. 금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- ① 금전, 유가증권, 부동산, 물품, 숙박권, 회원권, 입장권, 할인권, 초대권, 관람권,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
- ② 음식물·주류·골프 등의 접대·향응 또는 교통·숙박 등의 편의 제공
- ③ 채무 면제, 취업 제공,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
- 2) 금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되었을 때 윤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서면(전자문서 포함, 이하 같음)으로 신고함과 동시에 이를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
- ① 멸실·부패·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
- ② 해당 금품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
- ③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
- 3) 사교·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로서 법정 가액 범위 안의 금품은 위 1), 2)항의 예외로 할 수 있다. 여기서 ①음식물은 제공자와 함께 하는 식사, 다과, 주류, 음료 등을, ②선물은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을, ③경조사비는 축의금,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.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·음식물을 말한다.
- 4) 위 3)항의 '예외로 할 수 있는 금품'의 기준은 음식물 3만원, 선물 5만원,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로 한다. 다만,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해 5만원 이하로 한다. 부조금과 선물, 음식물을 함께 받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해 10만원 이하로 한다. 이 기준 가액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는 경우 즉시 윤리위원회에 귀속시키고 윤리위원회가 이를 처리한다.
- 5) 우리는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서 구입하는 등 상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그 밖의 개인적 이득을 꾀하지 않는다.

# 3. 보도 및 논평자료

우리는 보도 및 논평에 필요한 서적이나 음반 및 테이프 등의 자료를 받을 수 있다. 이 같은 자료는 회사의 소유로 하고 활용이 끝나면 정보자료부서로 이관한다.

#### 4. 취재비용과 여행

- 1) 우리는 취재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. 다만 일반적으로 승인된 취재편의가 제공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.
- 2) 우리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, 숙박, 음식물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의 비용으로 출장이나 여행, 연수를 가지 않는다.
- 3) 윤리위원회는 출장과 연수가 윤리강령에 어긋나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.
- 4) 외부지원이 전체 또는 일부 포함된 취재, 출장 및 여행 등의 신청서는 사전에 윤리위원장을 경유해야 한다.

## 5. 다른 목적을 위한 정보활동 금지

우리는 언론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지도, 제공하지도 않는다. 또 회사의 운영이나 신문제작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.

#### 6. 외부활동

우리는 공공의 이익과 본인의 발전을 위해 회사 업무 외의 외부활동에 종사할 수가 있다.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겨레의 명예와 이익에 반하지 말아야 하며, 윤리위가 정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.

# 7. 부정청탁의 금지

- ① 우리는 어떠한 부정청탁도 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. 만약,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.
- ② 위 ①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위 ②항의 신고를 받은 윤리위원회는 신고의 경위·취지·내용·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## 8. 위반행위의 신고

누구든지 회사 내에서 이 실천요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.

#### 9. 윤리위원회

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실천요강, 지침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심의·판단하여 필요한 조처를 취한다.

## 10. 시행

- ① 이 실천요강은 1988년 5월5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실천요강은 2001년 8월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③ 이 실천요강은 2009년 6월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④ 이 실천요강은 2013년 11월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⑤ 이 실천요강은 2016년 9월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끝.